감액처리에 대한 설명

[감액]

보험료, 보험금,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(이에 따라 보험료,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(해약환급금)도 줄어듭니다.)

[해지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

[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]

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.

구 분	감액전	감액후
보험가입금액	1,000만원	500만원
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	400만원	200만원
감액할 때 지급금액	200만원 (= 400	만원 - 200만원)

계약자적립액

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
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

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,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[㈜]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
㈜ 산출기초율: 계약체결비용, 계약관리비용, 이율 및 위험률 등

제2-8조의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

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

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 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, 보장내용 및 보 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.
 - 1.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가 폐지되 는 경우
 - 2.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의 변경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
 - 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 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 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
-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할 경우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(등기우편 등), 전화(음성녹음)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 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용, 보험료 변경내용, 특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안내합니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약의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(이하 "산출방법서" 라 합니다)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,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,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(또는 반환받을)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2-9조 특약의 소멸

-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.
 - 1. 주계약이 해지, 무효,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.

다만,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(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
- 2.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
- ②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특약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"사망"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
 - 1.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: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.
 - 2. 관공서에서 수해,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실종선고

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

민법 제27조(실종의 선고)

-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전지에 임한 자,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,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,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.

<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>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

-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제2-11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제2-11조 해약환급금

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. 다. 다만,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의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의 경우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

- 1. 이 특약의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"일반형"보다 낮은 보험료 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.
- 2. 이 특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.
- 3.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. 다만,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
※ 해약환급금

= 납입보험료 누계액^(주①) x "일반형"의 해약환급률^(주②)

(주)

- ① 납입보험료 누계액: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납입하기로 한 특약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「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감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 x 보험료 납입 기간 x 12, 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② "일반형"의 해약환급률: "일반형"의 납입보험료 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을 말하며, 소수점 4번째 자리 이하는 버림하고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- 4. 제2-3조(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)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"3"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.
- 5. "1" 및 "3"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"일반형"은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.
- 6.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(환급률 포함) 수준을 "일반형"과 비교·안내해 드립니다.
-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,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.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<부표1-1>"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"에 따릅니다.
-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.

제5관 기타사항

제2-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부표2-1

보험금 지급기준표



구분	지급사유	지급금액	
중환자실 입원급여금	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」하였을 때 (다만, 1회 입원당 60일 한도)	(다만, "간편심사형"에 한하여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	

- ※ 1년 미만: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
- 주) 1. 「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」 또는 「주계약이 해지, 무효,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」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 - 2.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적립액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- 3. "간편심사형"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"입원 급여금"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계속 입원 중에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상이 된 날부터 삭감하지 않습니다.
 - 4.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"질병 및 재해분류표"(<부표2-2> 참조)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.

부표2-2 질병 및 재해분류표



별첨2 [표 4] 참조

부표2-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(중환자실)



별첨2 [표 57] 참조

(간편)첫날부터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 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






약 관 목 차

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참조

제2편 개별사항

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-1조의2 "상급종합병원 입원"의 정의와 장소

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2-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-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-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-5조 사고증명서 제2-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

제2-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-8조의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2-9조 특약의 소멸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-11조 해약환급금

제5관 기타사항

제2-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[부표2-1] 보험금 지급기준표 [부표2-2] 질병 및 재해분류표

(간편)첫날부터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 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
- ※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.
- ※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- 일반심사형의 경우: "(간편)" 부분이 없습니다.
- 일반형의 경우: "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" 부분이 "(무배당)"으로 변경됩니다.
- ※ "간편심사형"과 "일반심사형"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제1-1조부터 제1-13조까지를 이 특약 "제1편 일반사항"으로 합니다.

※ [특약 약관] "제1편 일반사항"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제2편 개별사항

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

-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 또한,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-13조[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]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로 합니다.

제2-1조의2 "상급종합병원 입원"의 정의와 장소

① 이 특약에 있어서 "상급종합병원 입원"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(<부표2-2> 참조)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(이하 "질병 또는 재해"라 합니다)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"상급종합병원"에 입실 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② "상급종합병원"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에서 규정(<별첨1> 참조)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.

상급종합병원

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, 의료법 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

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2-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

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"상급종합병원"에 입원」하였을 때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(<부표2-1> "보험금 지급기 준표" 참조)을 지급합니다. (다만, 입원일수 1일당, 1회 입원당 180일 한 도)

※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"질병 및 재해분류표"(<부표2-2> 참조)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.

제2-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

-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 다만,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가 "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"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"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"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, 이 특약이 해당 약관의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.
- ②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경우 "간편심사형"에 한하여,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"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"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<부표2-1> "보험금 지급기준표"에서 정한바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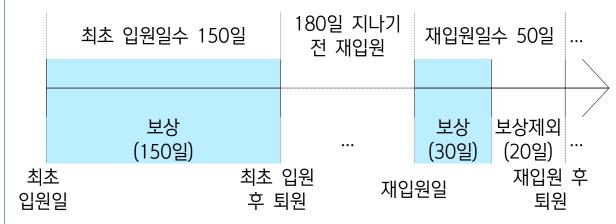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 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계속 입원 중에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는 계약일부터 1년 이상이 된 날부터 삭감하지 않습니다.
- ④ 재해는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며,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해당 재해와 관련한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.
- ⑥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 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「1회 입 원,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5항을 적용합니다.
-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"상급 종합병원 입원급여금"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. 다만, 아래와 같이 "상급종 합병원 입원급여금"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 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"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"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.

⁻ 최 상급종	조 합병원 이원급 의의 지급	·여금이 근되 상급종	문운 합병원 일일	
		퇴원없이 계속 입원		•••
	보상 (180일)	보상제외 (180일)	보상 (180일)	•••

["계속적인 입원" 및 "새로운 입원"의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 계산 예시]

<사례 1>

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개시한 입원의 경우 "계속적인 입원"에 해당하며, 동일한 「1회 입원」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계산합니다.



⇒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지급대상 입원일수 = (150일 + 50일) - 20일 = 180일(180일 한도 적용)

<사례 2>

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다시 개시한 입원의 경우 "새로운 입원"에 해당하며,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를 계산합니다.



- ⇒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지급대상 입원일수 = 150일 + 50일 = 200일
- ⑧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 특약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5 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속 "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"을 지급합니다.
- ⑨ 제2-2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경우 계속 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